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차의학 진흥 등〉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0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性差)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수면제의 여성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성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게 하여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며,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의 수집·관리 시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③ (생략) <u><신설></u>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u> 8.·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52조의2(성차의학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의학(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u>

현행	개정안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생략)	한다.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역학, 병리, 치료 방법 및 치료 성과,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에 대한 연구를 포괄함.¹⁾

일각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질환의 발생률, 증상, 이환율(Morbidity), 사망률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어, 성차의학이 맞춤요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견이 있음.²⁾

1) 성차의학연구소, 성차의학 개념정리(https://www.snubh.org/dh/main/index.do?DP_CD=SGSMK&MENU_ID=002003), (김정아 등, ‘국내외 보건 성차 연구 관련 기관 현황: 캐나다, 미국, 유럽,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51권2호 pp.43-63, 2025.5. 재인용)

2) 김나영,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 2022.12.

□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7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임상연구 대상자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 캐나다 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미국 국립보건원 등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원서에 성 또는 젠더를 고려하고 있는지 명시토록 하고, 연구 과정에서 성을 하나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음.³⁾

또한, 미국 공중보건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행되는 모든 임상 연구에 여성과 소수집단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⁴⁾

□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4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차의학 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25년 1월 대한성차의과학회가 창립된 바 있음. 또한 의학분야에 한정되지 않지만 2021년 2월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재단법인)는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을 통한 포용적 과학기술 성장을 미션으로 하고 있음.

- 젠더혁신이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차 및 젠더 차이를 반영한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3) 이문영 등, '성차의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소화기학회지 77권3호(pp.104-114), 2021.3.

4) United States Code, 2022 Edition

Title 42 -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HAPTER 6A - PUBLIC HEALTH SERVICE

SUBCHAPTER III -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Part H - General Provisions

Sec. 289a-2 - Inclusion of women and minorities in clinical research

(a) Requirement of inclusion

(1) In general

In conducting or supporting clinical research for purposes of this subchapter, the Director of NIH shall, subject to subsection (b), ensure that—

(A) women are included as subjects in each project of such research; and

(B) members of minority groups are included as subjects in such research.

지식 창출과 기술, 디자인 등 과학 기술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함.⁵⁾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1.4.20.) 조문 대비표 >

법률 제17671호	법률 제18069호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② (생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15의3. (생략)	1. ~ 15의3. (생략)
<u><신설></u>	<u>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u>
16. (생략)	16. (생략)
④ ~ ⑧ (생략)	④ ~ ⑧ (생략)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 ①·② (생략)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 ①·② (생략)
<u><신설></u>	<u>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 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 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생략)

5) 김정아 등, '국내외 보건 성차 연구 관련 기관 현황: 캐나다, 미국, 유럽,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51권2호 pp.43~63, 2025.5.

법률 제17671호	법률 제18069호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5년 4월 성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성차기반 질환연구를 주제로 ‘제8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⁶⁾ 성별 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및 임상현장 적용 가속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차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에 따른 질환별 예방 및 치료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예방·진단·치료·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관계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소화기계 질환(위, 대장, 췌담도, 간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6)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고 있음.

< 국립보건연구원 성차기반 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 (R&D) 개요 >

연구 목표

성차기반 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목표	- 성차를 반영한 예방·치료 개선의 과학적 근거 확보 - 질환에서의 성차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별 성과목표	총 연구기간을 2단계(예, 2+2년)로 나누어 단계별 성과목표 제시 ※ 1단계 종료 후 주요 실적 위주로 단계평가 실시 예정

연구 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025~2028 (4년)
- 총 연구비 : 37.5억 원 (1과제당)
- 연차별 연구비 : 1차년 7.5억 원, 2~4차년 연 10억 원

❖ 2차년 이후 연구비는 정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5.12.4.

□ 개정안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성차의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의무를 규정한 제52조의2를 신설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분야 중 성차의학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이 제52조의2(성차의학 진흥)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6장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장으로, 보건의료 시범사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등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진흥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기본법 제6장 구성 조항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6조(분쟁 조정 등)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제50조(국제협력 등)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참고로, 2026년도 예산에서 ‘성차기반 의료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질병관리청의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의 6개 내역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동 사업에는 ‘성차기반 의료기술개발’ 외에도 ‘만성질환 극복연구’ 등 5개의 내역사업이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에는 세부 사업 기준 총 140개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있음.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 중 R&D 사업 현황 >

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질병관리청	합계
세부사업수(개)	92	26	22	140

- 둘째,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 중 그 성질상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OECD, Eurostat 및 WHO가 제시하는 보건계정체계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는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은 국가 단위 의료비 규모를 나타내는 보건의료 재정통계로서 통계의 조사·분석 대상이 개인이 아님. 또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의 경우 제약회사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곤란한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함.
- ☐ 다만, 보건의료 통계·정보 중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안 제53조제2항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용함.

2) 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차의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연구가 의료현장에 반영되어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